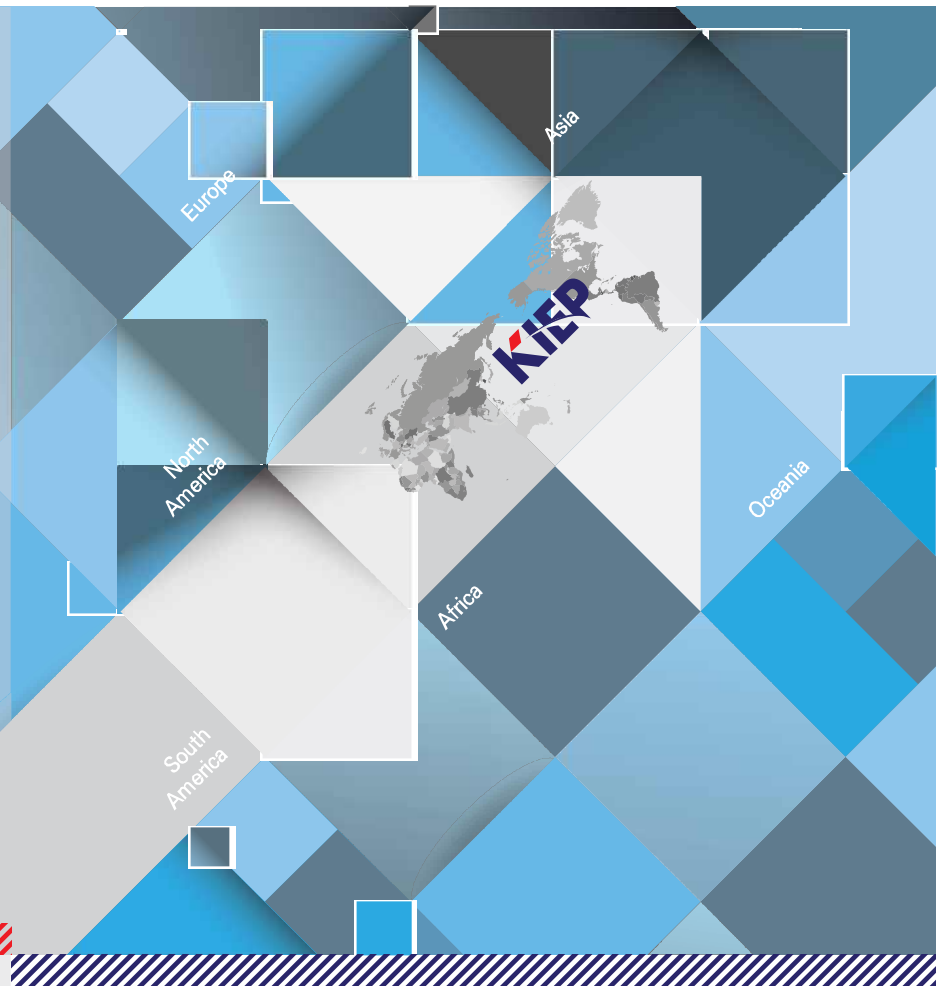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14

2018년 7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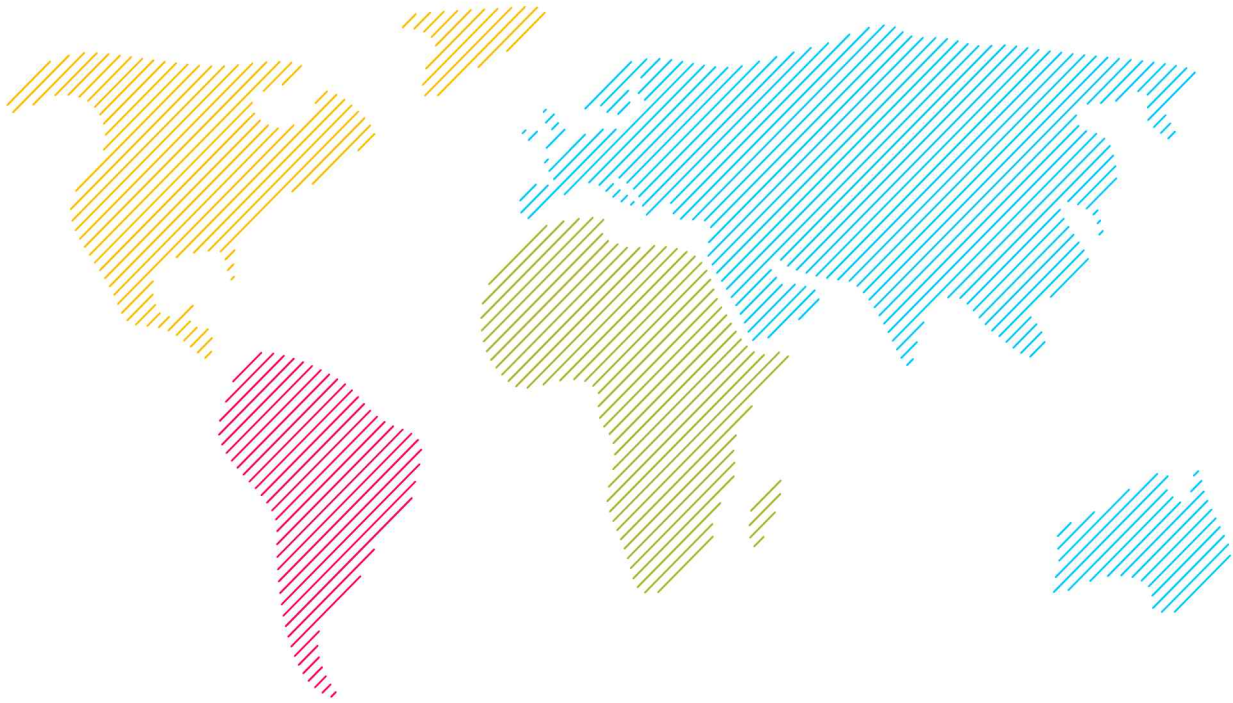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김민성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044-414-1113)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요약

-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국에서 겪는 통관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무역원활화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2018년 7월 현재 무역원활화협정 제1절의 36개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해 WTO 전체 회원국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은 60.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은 47.4%임.
 - 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발효 즉시 제1절의 모든 조항을 이행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113개 개도국이 제출한 A/B/C 의무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 분석 결과 A의무 비중이 60.4%, B의무는 7.7%, C의무는 1.1%이며, 미결정(미통보 포함)이 20.8%임.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만을 보면 A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113개국, B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67개국, C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56개국이며, A의무 비중은 47.4%, B의무와 C의무의 비중은 각각 10.9%, 14.6%이며, 미결정이 27.1%임.
 - 선진국은 이행 지원 현황 및 지원 요청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WTO 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신탁기금(TFAF)이 신설되어 운영 중임.
 - A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는 세관 통제하의 상품의 이동 허용, 선적 전 검사 금지, 유치,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 금지 등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협소한 조치들이 많으며, B의무로는 투명성 관련 조항, C의무로는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사후심사 등 고도의 위험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이행 비용이 높고 복잡한 항목이 많았음.
 -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A의무 비중이 90% 내외로 높은 편이었음.
 - 그러나 A의무 비중이 높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A의무로 지정된 모든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국가의 통관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보다는 A의무로 지정된 조치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통관 관련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협정 발효 1년 동안 개도국의 A/B/C 의무 및 이행일 통보, TFAF의 설립 등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은 WTO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A/B/C 의무 미통보 국가나 결정하지 못한 항목이 많은 국가들의 통보를 독려하고, A의무로 통보된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정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더불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차 례

1. 서론

2.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
- 나. 무역원활화협정 제1절의 주요 내용
- 다. 무역원활화협정 제2절 및 제3절의 주요 내용

3.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

- 가. WTO 전체 회원국의 이행 현황 및 주요 특징
- 나. 우리나라 수출상대국의 이행 현황 및 통관 관련 애로사항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회원국의 2/3 이상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에 정식 발효됨.

- 무역원활화는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2004년 7월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July Package)가 도출되면서 뒤늦게 DDA 정식 의제로 채택됨.
- 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자 DDA 의제 중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 일부와 최빈개도국 이슈 등 타결이 가능한 의제만을 선별한 조기 수확 패키지가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됨.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2001년 개시된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논의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더불어 통관 관련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최근 관세청에 접수된 통관 애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무역원활화협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면 일부 통관 애로사항의 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관세청에 접수된 통관 애로 건수는 2014년 407건, 2015년 444건, 2016년 461건으로 증가하고 있음.¹⁾

■ 본 자료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조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이행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이행 현황과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

■ 무역원활화협정은 총 3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신속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위한 조치이며, 제2절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우대 조치, 제3절은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규정임.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2).

- 제1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보의 공표 및 시행,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수수료의 합리화, 통과와 자유 보장, 수출입업자의 관련 법규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관 협력 등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 제2절에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제1절의 조항을 발효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A의무), 발효 후 이행까지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B의무),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C의무)로 분류하여 이와 함께 이행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선진국의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에 관한 정보 제출 요건 등을 명시함.
- 제3절은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방안,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임.

표 1.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

	조항	세부 조항
제1절	제1조 공표 및 정보의 이용 가능성	1. 공표, 2.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 가능성, 3. 질의처, 4. 통보
	제2조 의견 제시 기회, 시행 전 정보 및 협의	1. 의견 제시 기회 및 시행 전 정보, 2. 협의
	제3조 사전심사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제공의 의무화
	제4조 불복 또는 재심 청구 절차	세관의 행정 결정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불복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1. 강화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2. 유치, 3. 시험절차
	제6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규율	1.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2.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특별 규율, 3. 벌칙 규율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 도착 전 처리, 2. 전자적 지급, 3. 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요금의 분리, 4. 위험관리, 5. 통관사후심사, 6.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7.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8. 특송화물, 9. 부패성 상품
	제8조 국경기관 협력	국경 통제 및 상품의 수출입, 통과를 다루는 절차와 관련해 국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보장하고, 국경을 공유하는 회원국들 간 서로 합의된 조건 하에 근무일과 근무시간, 절차 및 형식, 공통 시설의 개발 및 공유, 공동 통제 등에서 협력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수입을 위한 상품이 세관 통제하에 도착지가 아닌 반출 또는 통관될 다른 세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보세운송을 허용
	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1. 형식 및 서류 요건, 2. 복사본의 수용, 3. 국제표준의 사용, 4. 싱글 윈도우, 5. 선적 전 검사, 6. 관세사의 사용, 7. 공통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8. 거부된 물품, 9. 상품의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
	제11조 통과	통과의 자유 보장
	제12조 세관 협력	준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 정보의 교환, 검증, 요청, 보호 및 비밀 유지, 정보의 제공,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상호주의, 행정부담, 제한, 미승인 사용 또는 공개, 양자 또는 지역 협정
제2절	제13조~제22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우대 조치
제3절	제23조~제24조	기관협정, 최종규정

자료: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무역원활화협정 제1절의 주요 내용

■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절은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 협력을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는 GATT 제10조와 관련된 규정으로 수출입, 통과 관련 정보의 공표 및 인터넷을 통한 공표, 시행 전 정보 및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사전심사, 불복 또는 재심 청구 절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임.

- 수출입, 통과 관련 정보²⁾를 신속히 공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공표되는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응답 및 필요한 양식 등을 제공하는 질의처를 운영하도록 함.
-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 법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개정 전에 이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와 적절한 기간을 제공하고 국내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강화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를 통해 SPS 협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SPS 협정에서 제시한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입제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통적인 제한 조치와 신속한 철회를 가능하게 하고, TBT 협정이나 SPS 협정을 근거로 물품이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험을 허용하여 시험이 무역장벽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험절차를 도입함.³⁾

■ 제6~10조는 GATT 제8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수료 및 요금의 합리화와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에 관한 규정이며 특히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는 무역원활화협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수출입 상품 관련 수수료 및 요금의 수와 종류의 축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세관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요금은 해당 특정 수출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제한됨.
- 관세법,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부과할 경우 처벌은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하며, 위반 적발 전에 미리 신고하면 이를 경감요소로 고려할 것을 권장함.
- 물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출 및 통관을 위해 △ 상품의 도착 전에 수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마련 △ 수출입 관련 관세, 조세, 수수료 및 요금의 전자적 납부 허용 △ 세금 및 수수료의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 △ 고위험군 물품을 집중 통제하고 저위험군 물품은 신속하게 반출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의 마련 △ 상품의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영업자에게 수출입·통과 관련 형식 및 절차에 있어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 제공 △ 신청할 경우 항공 화물에 대한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 △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허용에 대해 규정함.
- 수출입·통과 관련 형식 및 서류 요건의 간소화와 조화를 위해 △ 수출입·통과 관련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 최소화, 서류 요건의 간소화를 위한 형식 및 서류 요건의 검토를 의무화 △ 수출입·통과 관련 제출되는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의 수용 △ 수출입·통과 관련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국제표준의 사용을 권장 △ 무역업자가 수출입·통과 관련 서류 및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해 참여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윈도우 제도의 마련 △

2)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출입, 통과 관련 정보는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요구 형식 및 서류/수수료 및 요금/금지/별치 규정,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원산지 규정, 불복청구 절차, 관세 쿼터 등임.

3) 관세청(2014),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pp. 89~98.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선적 전 검사의 금지 △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 금지 △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의 적용 △ 수입자가 통관이 거부된 상품을 수출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허용 △ 상품의 일시 반입과 역내 및 역외 가공 허용에 대해 규정함.

■ 제11조는 GATT 제5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과와 자유에 관한 규정이며, 제12조는 수출입업자의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원국 세관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임.

- 통과와 자유화를 위해 통과 관련 규정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거되어야 하며 필요 시 덜 무역제한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 형식 및 서류 요건과 세관 통제의 최소화 △ 별도의 물리적 기반 시설 마련 △ 행정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및 요금 부과 금지 △ TBT 협정 및 SPS 협정의 미적용 △ 필요 이상의 보증금 제한 △ 종합보증과 보증의 갱신 허용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 세관 협력에서는 무역업자들이 준수 의무를 알 수 있게 보장하고, 수입자들이 벌금 없이 스스로 오류를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인 준수를 장려하고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더불어 수출입신고서나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른 회원국의 세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경우 세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정보 교환/검증/요청 절차, 기밀유지 의무, 정보제공의 범위,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사유, 검증에 의한 행정부담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음.

다. 무역원활화협정 제2절 및 제3절의 주요 내용

■ 제2절에서는 여타 WTO 협정과 달리 협정의 이행 정도와 시기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행 능력과 연계하여, 이 회원국들의 이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 능력을 획득할 때까지 이행 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음.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스스로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제1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A의무, B의무, C의무로 분류하고, 각 의무와 이행일자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이 외에도 △ B/C 의무의 이행일 연장 요청을 위한 절차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B/C 의무의 이행 능력 부족을 통보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 B의무 및 C의무 간 이동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⁴⁾ △ 기술 및 능력배양 지원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출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함.

■ 제3절의 기관협정은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방안,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며, 최종규정은 협정 발효에 관한 사항으로 협정의 모든 규정이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 있으며, TBT 협정 및 SPS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등에 관한 내용임.

4) 개도국의 경우 A의무는 협정 발효 후 2년, 최빈개도국의 경우 A의무는 협정 발효 후 6년, B/C 의무는 규정의 이행 후 8년 동안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면제받음.

3.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

가. WTO 전체 회원국의 이행 현황 및 주요 특징

1)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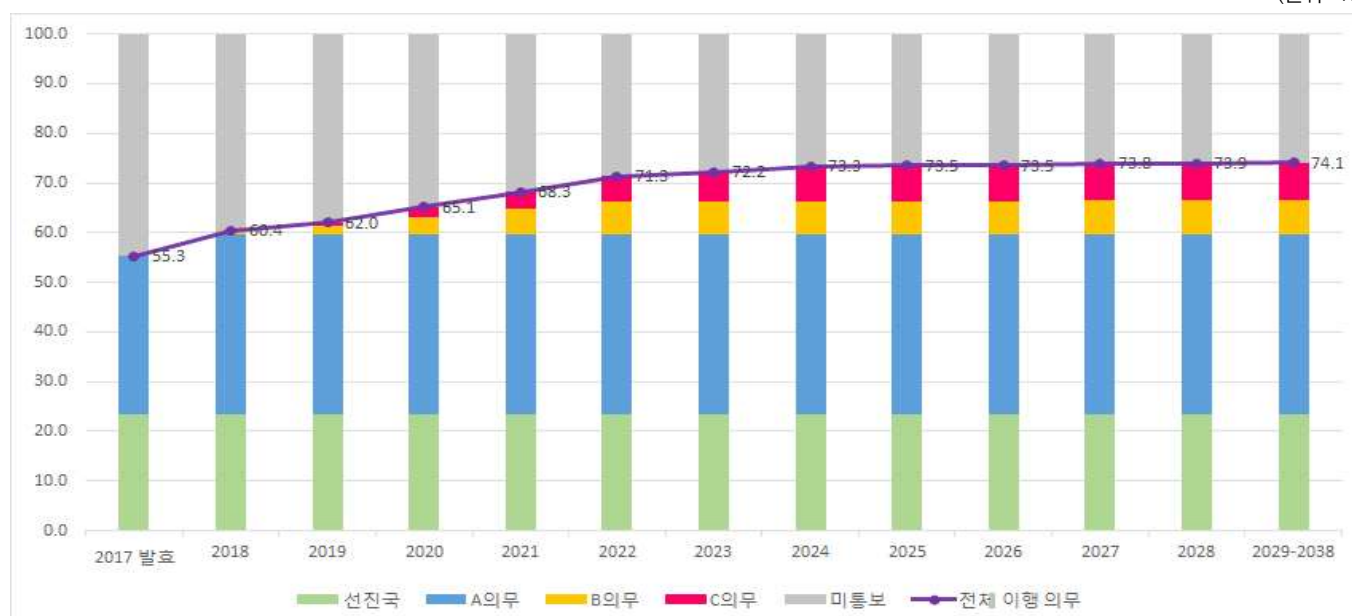
■ 2018년 7월 현재 164개 WTO 회원국 중 83.5%에 해당하는 137개 회원국이 개정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113개 개도국이 A/B/C 의무 및 이행일을 통보함.⁵⁾

■ 제1절의 12개 조항은 36개의 무역원활화 조치(measure)로 구성되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239개의 이행 가능한 항목(article item)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8년 7월 현재 WT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행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은 60.4%인 것으로 집계됨.

- 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협정 발효 즉시 제1절의 모든 조항을 이행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도국이 제출한 A/B/C 의무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을 분석한 결과 A의무의 비중은 60.4%, B의무는 7.7%, C의무는 11.1%이며, 미결정(미통보 포함)은 20.8%임.⁶⁾

그림 1.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추이 전망

(단위: %)



자료: WTO(2018), Trade Facilitation Database(검색일: 2018. 7. 2).

5)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검색일: 2018. 7. 2).

6)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검색일: 2018. 7. 2).

- 개도국이 제출한 B의무의 이행일은 2018년 9월~2038년 2월, C의무의 이행일은 2018년 9월~2032년 2월이며, 지금까지 제출된 통보문의 이행일대로 모든 의무가 이행될 경우 2038년에는 이행되고 있는 의무의 비중이 최소 7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7월 현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비중은 47.4%로 과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제출한 통보문에 따르면 A의무의 비중은 47.4%, B의무의 비중은 10.9%, C의무의 비중은 14.6%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항목이나 통보되지 않은 항목의 비중은 27.1%임.
- 2018년 7월 현재 A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113개국, B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67개국, C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56개국이며, 12개 회원국이 아직 통보문을 제출하지 않았음.
- 제1절의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를 A의무로 지정한 국가는 칠레, 홍콩,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 터키 8개국임.⁷⁾
-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의 A의무 비율이 각각 86.9%, 72.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아프리카 지역은 A의무 비율이 26.4%로 낮은 반면 미결정 항목이 45.8%로 높음.

그림 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A/B/C 의무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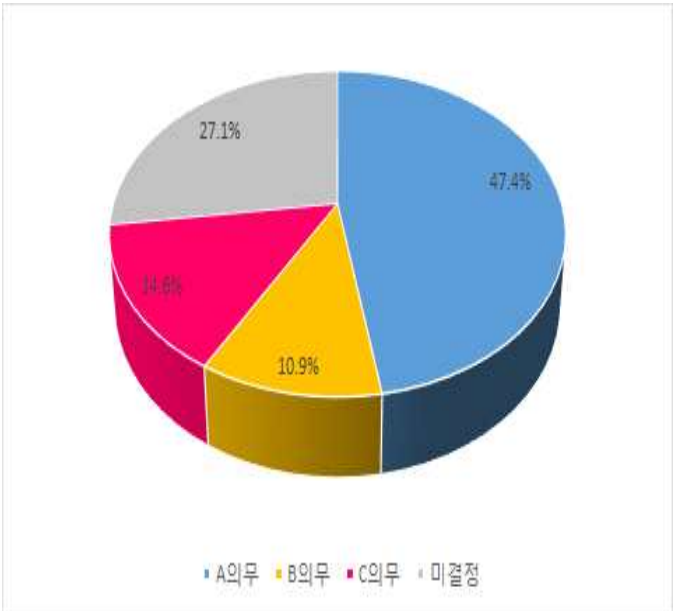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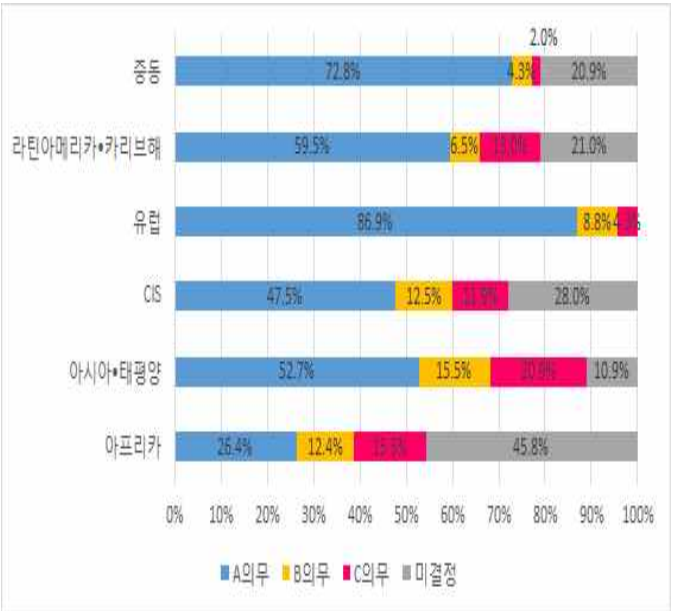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A/B/C 의무 비중

(단위: %)



자료: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검색일: 2018. 7. 2).

7) 칠레(G/TFA/N/CHL/1), 홍콩(WT/PCTF/N/HKG/1), 이스라엘(WT/PCTF/N/ISR/1), 한국(WT/PCTF/N/KOR/1), 멕시코(WT/PCTF/N/MEX/1), 싱가포르(WT/PCTF/N/SGP/1), 대만(WT/PCTF/N/TPKM/1), 터키(G/TFA/N/TUR/1)의 통보문 참고.

■ 한편 개도국의 A/B/C 의무 및 이행일자 통보와 더불어 이행 지원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은 지원 현황 및 지원 요청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함.

- 선진국 13개국이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현황 정보를 제출하였고, 8개국이 지원 요청을 위한 과정 및 메커니즘 관련 정보를 제출함.⁸⁾

■ 더불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2014년 7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지원 신탁 기금(TFA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TFAF의 주요 업무는 △ A/B/C 의무의 통보 준비를 포함한 해당 국가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는 수요평가프로그램 △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교재, 사례 연구 및 모범 관행 발굴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행 지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⁹⁾ △ C의무 관련 프로젝트 준비 및 이행 보조금 제공¹⁰⁾임.
-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영국, 미국은 기존의 무역원활화 수요 평가기 금이나 무역원활화 협상기금의 잔여 금액을 TFAF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기부함.

표 2. TFAF 지원 국가 및 지원 금액

(단위: CHF)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영국	미국
738,937	193,146	933,812	160,393	31,640	4,082,665	43,340	30,822	327,966	39,578

자료: 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Annual Report 2017, <http://www.tfafacility.org/annual-report-2017>(검색일: 2018. 7. 11).

2) 주요 특징

■ 36개의 무역원활화 조치 중 A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를 살펴보면 세관 통제하의 상품의 이동, 선적 전 검사, 유치, 관세사의 사용, 상품의 일시 반입 등 구체적이거나 협소한 이슈들로 상대적으로 이행비용이 낮고 단순한 조치들이며, B의무는 투명성과 관련된 조치가 과반 이상인 특징을 보임.

- C의무는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사후심사, 인가된 영업자, 평균 반출시간 측정,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표 등 고도의 위험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ICT 활용 등 이행 비용이 높고 복잡한 조치들임.

8) 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검색일: 2018. 7. 2).

9) △ 공여국 및 관련 국제기관과 수원국의 연계 △ 지원의 중복과 분산 방지를 위해 제공된 지원 간의 조율 △ 개별 국가의 개발, 재정 및 교역 요건에 맞는 지원 제공 등을 의미.

10) 프로젝트 준비 보조금은 잠재적 공여국은 발굴하였으나 공여국의 고려사항에 맞게 프로젝트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지급 되는 보조금으로 최대 USD 30,000까지 지급이 가능함. 프로젝트 이행 보조금은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관 세법의 현대화, 국내 워크숍, 공무원 교육 훈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지원되며, 최대 USD 200,000까지 지급이 가능함. 2017 WTO TFAF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17년 동안 보조금의 운영원칙을 개발하고 운영하려 하였으나 2017년까지 제출된 C의무 통보가 많지 않아 2018년으로 운영이 연기됨.

표 3. A의무와 B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

(단위: 통보 건수)

A의무			B의무		
조치	부분 이행	완전 이행	조치	부분 이행	완전 이행
제9조 상품의 이동	-	95	제6.1조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18	9
제10.5조 선적 전 검사	5	90	제1.4조 통보	6	18
제5.2조 유치	3	88	제2.1조 의견 제시 기회 및 시행전 정보	5	18
제10.6조 관세사의 사용	-	90	제2.2조 협의	2	21
제10.9조 상품의 일시반입	2	88	제10.2조 복사본의 수용	3	19
제10.7조 공통국경절차	3	86	제1.1조 공표	2	20
제10.8조 거부된 물품	4	85	제5.1조 강화된 통보 또는 검사의 통보	-	21
제6.3조 벌칙 규율	34	49	제6.3조 처벌규율	4	16
제7.3조 반출분리	12	64	제1.3조 질의처	1	18
제11조 통과	6	70	제7.8조 특송화물	4	15

자료: 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검색일: 2018. 7. 2).

■ WTO(World Trade Report 2015, pp. 116-118)는 무역원활화 이행을 위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C의무를 제출한 56개 회원국이 요청한 지원을 이러한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미결정을 제외하고 인적자원 및 훈련이 33.1%로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및 규제 체제가 28.9%, 정보통신기술이 26.0% 순으로 높았음.

- 인적자원 및 훈련은 국경관리기관 및 무역 관련 이해관계자가 무역원활화 형식 및 운영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채용, 내부 직원 교육 등이 있음.
- 인적자원 및 훈련은 종종 무역원활화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데, 이는 무역원활화 개혁이 주로 국경 관련 기관의 관행과 행동 방식의 변경과 관련되기 때문임.
- 법률 및 규제 체제는 특정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일부 법·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도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률 및 규제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 비용을 포함함.
- 정보통신기술은 가상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 스캐너와 같은 ICT를 포함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임.
- ICT는 위험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X-Ray 스캐너, 전자적 제출 및 도착 전 문서 처리를 위한 컴퓨터시스템과 같은 특정 무역원활화 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무역원활화 개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
- 조직 개편(institutional procedures)은 보다 효율적으로 특정 무역원활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unit)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부서를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임.
- 예를 들면 통관 후 심사의 도입, 위험관리 절차의 적용 또는 질의처의 설립은 행정, 운영, 지원과 같은 특정 부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인프라 및 장비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이행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장비나 인프라가 무역원활화조치의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 개혁 중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요소로 인식됨.
- 진단 및 수요 평가는 무역원활화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질적인 이

행 전략을 준비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과 국내외 전문가 비용을 포함함.

- 인지도 제고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을 위한 투명성 제고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행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해관계자의 지지, 참여 및 주체정신(ownership)은 무역원활화 조치의 도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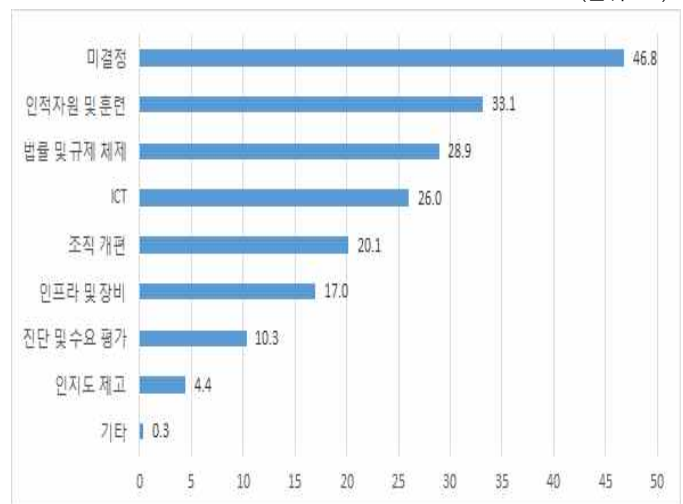
표 4. C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

(단위: 통보 건수)

조치	부분 이행	완전 이행
제10.4조 싱글윈도우	1	48
제5.3조 시험절차	-	36
제7.7조 인가된 영업자	1	33
제7.4조 위험관리	3	31
제7.6조 평균 반출시간 측정	1	29
제1.2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 가능성	2	26
제8조 국경기관 협력	2	26
제1.3조 질의처	4	24
제3조 사전심사	1	26
제7.5조 사후검사	-	24

그림 4. C의무 이행 관련 기술 지원 요청 유형

(단위: %)



자료: WTO(2018), Trade Agreement Database(검색일: 2018. 7. 2).

나. 우리나라 수출상대국의 이행 현황 및 통관 관련 애로사항

1) 이행 현황

- 2017년 수출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20개 수출상대국에서 선진국을 제외한 13개 개도국이 WTO에 제출한 A/B/C 의무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 분석을 통해 주요 수출상대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¹¹⁾

11) 2017년 수출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20개 수출상대국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개 국가 중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5개 선진국을 제외한 15개 국가 중 러시아는 비준 통보는 완료하였으나 A/B/C 의무에 관한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마셜제도는 WTO 회원국이 아님.

순위	국가	금액(억 원)	비중(%)	순위	국가	금액(억 원)	비중(%)
1	중국	1,421	24.8	11	필리핀	106	1.8
2	미국	686	12.0	12	독일	85	1.5
3	베트남	478	8.3	13	인도네시아	84	1.5
4	홍콩	391	6.8	14	영국	81	1.4
5	일본	268	4.7	15	말레이시아	80	1.4
6	호주	199	3.5	16	태국	75	1.3
7	인도	151	2.6	17	러시아	69	1.2
8	대만	149	2.6	18	마셜제도	69	1.2
9	싱가포르	117	2.0	19	터키	62	1.1
10	멕시코	109	1.9	20	브라질	55	1.0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개도국 중 필리핀과 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A의무 비중이 90% 내외로 협정 발효 즉시 이행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B의무 이행일이 2018년 2월 22일~2024년 2월 2일까지로 2024년 이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에서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행될 전망이다.

- 홍콩,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는 제1절의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를 A의무로 통보함.
- 중국의 경우 무역원활화 조치의 94.5%가 A의무이고, B의무는 평균 반출시간의 측정 및 공표, 싱글윈도우, 세관 협력 분야 중 정보의 교환, 정보의 제공이며 확정 이행일은 2020년 2월 22일임.¹²⁾
- 베트남은 A의무 비중이 22.7%로 낮은 편이며 A의무로 지정하지 않은 그 외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하지 않은 상태임.
 - 특히 무역원활화협정의 핵심 사항인 제7조에서 특송화물을 제외한 모든 조치와 싱글윈도우 등 이행 비용이 높고 복잡한 항목에 대해서 아직 통보하지 않았음.¹³⁾
- 인도는 A의무 비중이 72.3%이며, B의무의 확정 이행일은 2022년 2월 22일임.¹⁴⁾
- 필리핀은 A의무 비중이 93.3%로 높으며, B의무로 강화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국경기관협력, 거부된 상품을 지정하고 확정 이행일은 2019년 12월 31일~2020년 12월 31일로 통보함.
 -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 중 유일하게 C의무를 지정하였는데, 지정된 C의무는 싱글윈도우로 확정 이행일은 2020년 12월 31일임.
 - C의무와 관련하여 요청한 지원은 △ 싱글윈도우에 참여하는 정부기관과 관련 분야 인적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훈련 및 기타 기술 지원 △ 싱글윈도우 운영체제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금 지원 △ 모든 항구와 싱글윈도우 참여 기관이 싱글윈도우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IT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 지원임.¹⁵⁾
- 인도네시아는 A의무 비중이 88.7%이며, B의무로 사전심사, 강화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위험관리를 지정하고 확정 이행일은 2022년 2월 22일로 통보함.¹⁶⁾
- 말레이시아 역시 A의무 비중이 94.1%로 높으며, B의무로 특송화물, 통과 관련 상품의 도착 전 통과 서류 및 데이터의 사전 파일링 및 처리를 지정하고 잠정 이행일을 2022년 2월 22일로 보고하였으며 아직 확정 이행일은 통보하지 않은 상태임.¹⁷⁾
- 태국도 A의무 비중이 93.7%로 높으며, 지정된 B의무는 불복 또는 재심 청구 절차, 벌칙 규율, 도착 전 처리, 통과, 세관 협력 관련 일부 항목으로 확정 이행일은 2018년 2월 22일~2024년 2월 22일임.¹⁸⁾
- 브라질의 A의무 비중은 95.8%이며, 지정된 B의무는 도착 전 처리, 인가된 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 통과 관련 상품의 도착 전 통과 서류 및 데이터의 사전 파일링 및 처리이며 확정 이행일은 2019년 12월 31일임.¹⁹⁾

자료: 한국무역협회(2018), 무역통계 DB(검색일: 2018. 7. 6).

12) 중국의 통보문(G/TFA/N/CHN/1/Add.2).

13) 베트남의 통보문(WT/PCTF/N/VNM/1).

14) 인도의 통보문(G/TFA/N/IND/1).

15) 필리핀의 통보문(G/FTA/N/PHL/1).

16) 인도네시아의 통보문(G/TFA/N/IDN/1).

17) 말레이시아의 통보문(G/TFA/N/MYS/1).

18) 태국의 통보문(G/TFA/N/THA/1/Add.1).

19) 브라질의 통보문(G/TFA/N/BRA/1/Add.1).

표 5.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A/B/C 의무 비중 현황

(단위: %)

	홍콩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니	말련	태국	브라질
A의무	100	100	100	100	100	94.5	22.7	72.3	93.3	88.7	94.1	93.7	95.8
B의무	-	-	-	-	-	5.5	-	27.7	5.0	11.3	5.9	6.3	4.2
C의무	-	-	-	-	-	-	-	-	1.7	-	-	-	-
미결정	-	-	-	-	-	-	77.3	-	-	-	-	-	-

자료: 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의 내용을 저자 정리(검색일: 2018. 7. 5).

표 6.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무역원활화 조치별 A/B/C 의무 통보 현황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니	말련	태국	브라질
1.1 공표	A	N	Ap/Bp	A	A	A	A	A
1.2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	A	N	Ap/Bp	A	A	A	A	A
1.3 질의처	A	A	B	A	A	A	A	A
1.4 통보	A	A	B	A	A	A	A	A
2.1 의견 제시 기회 및 시행 전 정보	A	A	Ap/Bp	A	A	A	A	A
2.2 협의	A	A	A	A	A	A	A	A
3 사전심사	A	N	Ap/Bp	A	B	A	A	A
4 불복 또는 재심 청구 절차	A	Ap	Ap/Bp	A	A	A	Ap/Bp	A
5.1 강화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A	N	Ap/Bp	B	B	A	A	A
5.2 유치	A	N	A	A	A	A	A	A
5.3 시험절차	A	N	A	A	A	A	B	A
6.1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A	A	A	A	A	A	A	A
6.2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특별 규율	A	A	A	A	A	A	A	A
6.3 벌칙 규율	A	N	Ap/Bp	A	A	A	Ap/Bp	A
7.1 도착 전 처리	A	N	Ap/Bp	A	A	A	Ap/Bp	B
7.2 전자적 지급	A	N	A	A	A	A	A	A
7.3 반출의 분리	A	N	B	A	A	A	A	A
7.4 위험관리	A	N	B	A	B	A	A	A
7.5 통관 후 심사	A	N	Ap/Bp	A	A	A	A	A
7.6 평균 반출시간 측정	B	N	A	A	A	A	A	A
7.7 인가된 영업자	A	N	A	A	A	A	A	Ap/Bp
7.8 특송화물	A	A	Ap/Bp	A	A	B	A	A
7.9 부패성 상품	A	N	Ap/Bp	A	A	A	A	A
8 국경기관 협력	A	N	Ap/Bp	B	A	A	A	A
9 상품의 이동	A	A	A	A	A	A	A	A
10.1 형식 및 서류 요건	A	A	A	A	A	A	A	A
10.2 복사본의 수용	A	A	Ap/Bp	A	A	A	A	A
10.3 국제표준의 사용	A	N	A	A	A	A	A	A
10.4 싱글윈도우	B	N	B	C	A	A	A	A
10.5 선적 전 검사	A	N	Ap/Bp	A	A	A	A	A
10.6 관세사의 사용	A	A	A	A	A	A	A	A
10.7 공통국경절차	A	A	A	A	A	A	A	A
10.8 거부된 물품	A	N	Ap/Bp	B	A	A	A	A
10.9 상품의 일시 반입	A	N	Ap/Bp	A	A	A	A	A
11 통과	A	Ap	Ap/Bp	A	A	Ap/Bp	Ap/Bp	Ap/Bp
12 세관 협력	Ap/Bp	N	A	A	A	A	Ap/Bp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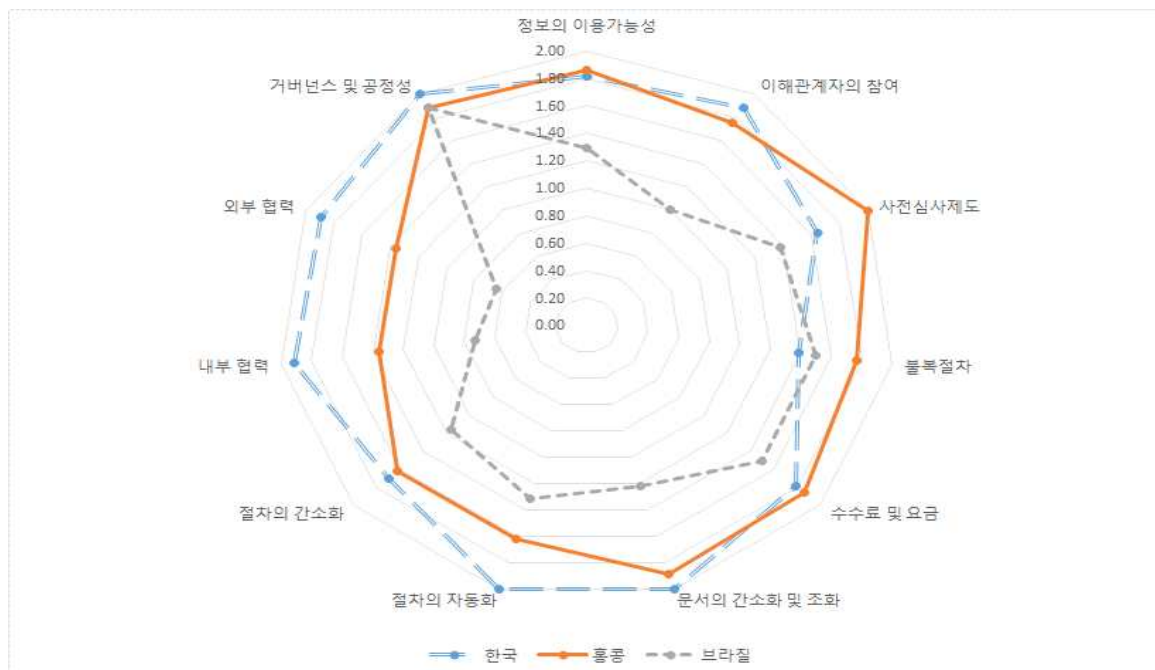
주: Ap/Bp는 무역원활화 조치별 일부 항목은 A의무, 일부 항목은 B의무를 뜻함.

자료: WTO(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의 내용을 저자 정리(검색일: 2018. 7. 5).

■ 그러나 A의무의 비중이 높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A의무로 지정된 모든 조치가 실제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국가의 통관 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컨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OECD 무역원활화지수를 통해 각국의 무역원활화 현황을 살펴 보면 제1절의 모든 조치를 A의무로 지정한 한국, 홍콩은 실제로도 매우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의 경우 아직 통관 환경이 취약한데 특히 브라질이 A의무라고 통보한 의견 제시 기회 및 협의(이해관계자의 참여), 국경기관 협력(내부 협력), 국경공동절차(외부 협력)에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²⁰⁾

그림 5. 한국, 홍콩 및 브라질의 OECD 무역원활화지수(2017년 기준)



자료: OECD(2018),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http://www.oecd.org/trade/facilitation/indicators.htm>(검색일: 2018. 7. 13).

2) 통관 관련 애로사항

■ 결국 실제 A의무의 효율적인 이행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A의무로 지정된 조치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WTO 회원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A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각국의 통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수출상대국에서 겪고 있는 대표적인 통관 관련 애로사항은 과도한 검역 및 인증 요건으로 인한 통관 지연,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성·불합리성,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일선 세관의 임의적인 규정·해석처리,

20) OECD 무역원활화지수는 무역원활화협정 당시 무역원활화협정 통합문안에 기초하여 개발한 지수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절 1~12조에 속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그 유사성을 고려하여 10개의 지수로 재분류하고 거버넌스 및 공정성 지수를 추가하여 11개로 구성됨. OECD 무역원활화지수는 전 세계 160여 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각국의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법과 같은 공식 출판물, 연례보고서, 각종 통계, 설문조사 등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국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국의 검토와 전문가 작업을 거쳐 최종 산출된 지수로 각국의 무역원활화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 중 하나임. 0~2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임.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통관 절차, 세관 직원의 부정부패 등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해소 가능한 부분이 존재함.

- 과도한 검역 및 인증 요건으로 인한 통관 지연은 무역원활화협정의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허용, 식품, 음료 및 사료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의 철회 및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의 적용, 재시험 기회 부여 등과 연관될 수 있음.

표 7.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관 관련 애로사항 사례

국가	통관 애로사항
미국	- 미국 내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 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
EU	- EU 세관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중국	-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중국 CFD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위생안전성 검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또한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 수입할 때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CFDA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호주	- 철저한 검역으로 인해 일부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 - 한국산 배 수입 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한국산 육가공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임.
인도	-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통관시간 소요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 - 최근에는 포화지방 알코올과 무용접 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각각 2017년 8월 28일과 8월 13일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별도의 종료 공시를 내지 않은 바 있음.
태국	-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함.
필리핀	- 통관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 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 과세 등 부패의 형태는 다양함.
브라질	- 최근 싱글윈도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
러시아	-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관행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며, 러시아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 경미한 하자가 있어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보편적임. - 동일한 HS 코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함. -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수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pp. 107~13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수출입·통과 관련 형식 및 서류 요건의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통관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위험관리, 싱글윈도우, 도착 전 처리, 통관사후 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가 가능해짐.
-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상품의 반출을 위한 공통의 세관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이 의무화되어 세관에 따라 상이한 절차 및 서류 요건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요금의 합리화와 전자적 납부로 세관 직원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통관 관련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협정 이행 과정에서 통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필요사항을 파악 후 적절한 지원을 통해 통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국가라도 구속력 있는 규정의 제정으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협정국 간에 적용되는 무역원활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다자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2016년에 무역원활화 관련 기관의 장관급 공동 위원회(Inter-Ministerial Joint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가 설립되고, 2017년에는 모든 주 및 지자체로 구성된 무역원활화에 대한 지방정부공동위원회(provincial-level joint committees on trade facilitation)가 설립되었으며, 종합적인 통관 반출 개혁이 단행되고 싱글윈도우가 확대 적용되는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²¹⁾

■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1년 이후 개도국은 A/B/C/ 의무 및 이행일을 통보하고 선진국은 이행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며,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 신탁기금인 TFAF를 설치하여 여러 활동을 통해 개도국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등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은 WTO의 다른 분야 논의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018년 7월 현재 164개 WTO 회원국 중 83.5%에 해당하는 137개 회원국이 개정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 완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가운데 선진국을 제외한 113개 개도국이 A/B/C의무 및 이행일에 대해 통보하고 12개국이 미통보 상태임.
- WTO 전체 회원국의 A의무 비중은 60.4%이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A의무 비중은 47.7%로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1) WTO(2018), p. 5.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A의무 비중이 90% 이상으로 협정의 대부분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됨.
-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A의무 통보 비중이 높더라도 A의무로 통보된 모든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우수한 통관환경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A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더불어 WTO 차원에서 아직 A/B/C 의무를 통보하지 않은 개도국이나, 통보는 하였으나 미결정 항목이 많은 국가를 독려하고 정확한 진단 및 수요 평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무역원활화협정은 여타 WTO협정과 달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협정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능력이 충족될 때까지 이행 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C의무로 많이 통보한 위험관리, 싱글윈도우, 사후심사 등은 무역원활화의 핵심 조치로 고도의 위험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ICT 활용 등 이행 비용이 높고 복잡한 조치들이며,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과 기대 효과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C의무 이행 관련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요청한 지원이 교육 훈련, 법제도 정비, ICT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지원에 집중된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통관/싱글윈도우 시스템의 구축, 관련 담당자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필리핀의 경우 C의무로 싱글윈도우를 지정하고 교육 훈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싱글윈도우는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협상 시 적극적으로 제안한 조치이며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에디오피아 등에 싱글윈도우시스템 구축을 수출한 경험이 있음.²²⁾
- 우리나라는 GATT/WTO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나 그동안 WTO 내에서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과 기술,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 더불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통관시스템의 국제표준화와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품질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²³⁾ KIEP

22) 자세한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현황은 부록을 참고.

23) 관세청 보도자료(2017. 3. 13).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세청. 2014.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 _____. 2017.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4천억 원' 돌파」. 보도자료. (3월 13일)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9월 2일)
- _____. 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영문자료]

- WTO. 2015. World Trade Report 2015.
- _____. 2018.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China(WT/TPR/G/375).
-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온라인 자료]

-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https://www.tfadatabase.org/>(검색일: 2018. 7. 2~7. 5).
- WTO. 2018.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Annual Report 2017. <http://www.tfafacility.org/annual-report-2017>(검색일: 2018. 7. 11).
- 한국무역협회. 2018. 무역통계 DB. <http://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18. 7. 6).

[WTO 통보문]

- 대만 WT/PCTF/N/TPKM/1
- 말레이시아 G/TFA/N/MYS/1
- 멕시코 WT/PCTF/N/MEX/1
- 브라질 G/TFA/N/BRA/1/Add.1
- 베트남 WT/PCTF/N/VNM/1
- 싱가포르 WT/PCTF/N/SGP/1
- 이스라엘 WT/PCTF/N/ISR/1
- 인도 G/TFA/N/IDN/1
- 인도네시아 G/TFA/N/IND/1
- 중국 G/TFA/N/CHN/1/Add.2
- 칠레 G/TFA/N/CHL/1
- 필리핀 G/FTA/N/PHL/1
- 터키 G/TFA/N/TUR/1
- 태국 G/TFA/N/THA/1/Add.1
- 한국 WT/PCTF/N/KOR/1
- 홍콩 WT/PCTF/N/HKG/1

[부록]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현황

국가명	사업명	계약시기	금액
카자흐스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	2005년 10월	42만 달러
키르기스스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	2008년 3월	47만 달러
도미니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2008년 4월	2,850만 달러
몽골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2009년 3월	554만 달러
과테말라	RM 및 DW 구축	2009년 12월	300만 달러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2010년 12월	2,163만 달러
네팔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2011년 8월	383만 달러
탄자니아	RM 및 화물관리 구축	2011년 8월	266만 달러
에콰도르	싱글윈도우시스템 구축	2011년 9월	1,582만 달러
탄자니아	신(新)세관시스템 구축	2012년 8월	1,961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시스템 구축	2014년 12월	412만 달러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2015년 9월	23,000만 달러
에티오피아	싱글윈도우시스템 구축	2017년 3월	1,325만 달러
합 계	11개국, 13건		3억 4,885만 달러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17. 3. 13).